

## 실명제 사업내역서

사업실명제 등록번호	2018-05	담당부서 작성자	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평가사업관리팀 한경희 주임연구원 (02-2174-2854/lovelysmile@neca.re.kr)
사 업 명	신의료기술평가사업(보건복지부 위탁사업, 고유사업)		
사업개요 및 추진경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추진배경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국가차원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국민 건강권 보호 및 관련 의료기술 발전 촉진에 기여(의료법 제53조)</li> <li>-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자료 수집·조사 등 평가에 수반되는 업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(의료법 제55조,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)</li> </ul> </li> <li>○ 추진기간 : 2018.1.1. ~ 2018.12.31.(계속)</li> <li>○ 총사업비 : 2,427백만원('18년 2,309백만원, 이월 118백만원)</li> <li>○ 주요내용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신의료기술평가(원스탑서비스 제도, 제한적 의료기술평가,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, 의료기기 허가 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등 포함) 관련 자료의 수집·조사, 위원회 운영 등 평가에 수반되는 업무</li> </ul> </li> <li>○ 추진경과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2006. 10. : 「의료법」 개정·공포</li> <li>- 2007. 04. : 「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」 제정</li> <li>- 2007. 04. :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시행</li> <li>- 2007. 06. : 신의료기술평가 수반사업 위탁(보건복지부→건강보험심사평가원)</li> <li>- 2010. 06. : 신의료기술평가 수반사업 연구원으로 이관</li> <li>- 2013. 07. : 신의료기술평가 수반사업 연구원 고유사업 포함</li> <li>- 2013. 11. : 원스탑 서비스 제도 시범사업 실시</li> <li>- 2014. 04. : 제한적 의료기술평가 제도 시행</li> <li>- 2014. 04. : 신의료기술평가 심의기준 마련</li> </ul> </li> </ul>		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2014. 08. : 신의료기술평가 원스탑 서비스 제도 시행</li> <li>- 2014. 10. : 제한적 의료기술평가 제도 시행</li> <li>- 2015. 05. : 신의료기술평가 법정기한 단축(365일→280일)</li> <li>- 2015. 09. :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 시행</li> <li>- 2016. 02. : 검사분야 신의료기술평가 법정기한 단축(280일→140일)</li> <li>- 2016. 05. : 의료기기 허가 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시범사업 실시</li> <li>- 2016. 07. : 의료기기 허가 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제도 시행</li> <li>- 2016. 11. : 제한적 의료기술 대상 범위 확대</li> <li>- 2017. 11. : 의료기기 허가 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적용 대상범위 확대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사업수행자 (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최초 입안자 :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장 신채민</li> <li>- 최종 결재자 : 원장 이영성</li> </ul> </li> <li>○ 사업 관련</li> </ul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 style="background-color: #cccccc;"> <th style="width: 15%;">구분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성명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직급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수행기간</th> <th style="width: 40%;">담당업무 (업무분담 내용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신의료기술평가 사업본부장</td> <td>신채민</td> <td>선임 연구위원</td> <td>'18.1.~'18.12.</td> <td>신의료기술평가사업 총괄</td> </tr> <tr> <td>평가사업 관리팀장</td> <td>이상만</td> <td>책임 행정원</td> <td>'18.1.~'18.12.</td> <td>신의료기술평가사업 관련 행정</td> </tr> <tr> <td>평가사업팀장</td> <td>고려진</td> <td>부연구 위원</td> <td>'18.1.~'18.12.</td> <td>신의료기술평가수행 및 위원회 운영</td> </tr> <tr> <td>근거창출 지원팀장</td> <td>이월숙</td> <td>연구 위원</td> <td>'18.1.~'18.12.</td> <td>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</td> </tr> <tr> <td>평가사업 협력팀장</td> <td>김주연</td> <td>부연구 위원</td> <td>'18.1.~'18.12.</td> <td>고객소통 및 제도개선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성명	직급	수행기간	담당업무 (업무분담 내용)	신의료기술평가 사업본부장	신채민	선임 연구위원	'18.1.~'18.12.	신의료기술평가사업 총괄	평가사업 관리팀장	이상만	책임 행정원	'18.1.~'18.12.	신의료기술평가사업 관련 행정	평가사업팀장	고려진	부연구 위원	'18.1.~'18.12.	신의료기술평가수행 및 위원회 운영	근거창출 지원팀장	이월숙	연구 위원	'18.1.~'18.12.	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	평가사업 협력팀장	김주연	부연구 위원	'18.1.~'18.12.	고객소통 및 제도개선
구분	성명	직급	수행기간	담당업무 (업무분담 내용)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신의료기술평가 사업본부장	신채민	선임 연구위원	'18.1.~'18.12.	신의료기술평가사업 총괄																											
평가사업 관리팀장	이상만	책임 행정원	'18.1.~'18.12.	신의료기술평가사업 관련 행정																											
평가사업팀장	고려진	부연구 위원	'18.1.~'18.12.	신의료기술평가수행 및 위원회 운영																											
근거창출 지원팀장	이월숙	연구 위원	'18.1.~'18.12.	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																											
평가사업 협력팀장	김주연	부연구 위원	'18.1.~'18.12.	고객소통 및 제도개선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다른 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보건복지부(소관부처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자원정책과 : 과장 곽순현, 사무관 권용진, 주무관 안제현</li> </ul> </li> <li>○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의료기관 및 비의료기관(의료기회사, 제약회사, 학회 등)</li> </ul> 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추진실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및 평가결과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2007. ~ 2017. : 신의료기술평가 2,310건 신청, 이 중 시장진입 결정 총 1,152건 (신의료기술 인정 790건(42%), 기존기술 인정 362건(19%))</li> </ul> </li> <li>○ 제한적 의료기술 : '17년 말 기준 6개 기술, 20개 실시기관 근거 창출 지원</li> <li>○ 평가유예 의료기술 : '17년 말 기준 2개 기술 선정 및 고시 완료</li> <li>○ 2017년 제도개선 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2017. 04. : 「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」 개정 (소위원회 업무범위 구체화 및 국고지원비용 반환기준 명시)</li> <li>- 2017. 09. : 「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」 개정 (신의료기술 평가대상 한정 관련 심의기준 재정비)</li> <li>- 2017. 11. : 「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」 개정 (분과위원회 운영근거 마련 및 평가결과 통보 기간 산정 규정 정비)</li> <li>- 2017. 11. : 「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」 개정 (통합운영 적용 대상범위 확대)</li> </ul> </li> </ul>
------	--